

2026 개별행정법 교과서 수정표

목차

1. 개별행정법 교과서 수정

2. 개별행정법 워크북 수정

3. 유의사항

<2026 개별행정법 교과서 수정표>는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교과서나 동영상강의는 개별 행정법 교과서 수정표에 맞추어 변경되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과목: 개별행정법(학부)

1. 교과서 수정 사항

<행정기관 명칭 일괄 변경>

검찰청 ->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체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

특허청 -> 지식재산처(국무총리 소속)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편 행정조직법

8쪽

합의제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방송위원회¹⁾,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상심의회 등이 있다.

변경 ->

합의제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²⁾,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상심의회 등이 있다.

15쪽

다음으로 지정대리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의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경우(동법 제22조)를 들 수 있다.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때에 일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서리(署理)라 한다.

변경 ->

다음으로 지정대리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경우(동법 제22조)를 들 수 있다.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때에 일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서리(署理)라 한다.

27쪽

국무회의는 대통령인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1) 서울고법 2008.2.19. 선고 2007누21053 판결 참조; 현재 명칭은 방송통신위원회임.

2) 서울고법 2008.2.19. 선고 2007누21053 판결 참조. 당시 명칭은 방송위원회.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

변경 ->

국무회의는 대통령인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

28쪽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제23조, 제25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보좌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있다(동법 제20조, 제21조).

변경->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가 있고(「정부조직법」 제23조부터 제28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보좌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있다(동법 제20조, 제21조).

28쪽

행정각부란 대통령의 통할하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부문별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헌법」 제96조), 그 기본법이 「정부조직법」이다. 동법은 행정각부로서 기획재정부 등을 설치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변경->

행정각부란 대통령의 통할하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부문별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헌법」 제96조), 그 기본법이 「정부조직법」이다. 동법은 행정각부로서 재정경제부 등을 설치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29쪽

2)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행정각부장관은 부령 제정권(「헌법」 제95조), 소관사무에 대한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정부조직법」 제26조 제3항), 소관사무통할권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동법 제7조 제1항), 국무회의의안 제출권 및 소집요구권(동법 제12조 제3항), 소속 공무원임면제청권 및 임용권(「국가공무원법」 제32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변경->

2)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행정각부장관은 부령 제정권(「헌법」 제95조), 소관사무에 대한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정부조직법」 제29조 제3항), 소관사무통할권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동법 제7조 제1항), 국무회의의안

제출권 및 소집요구권(동법 제12조 제3항), 소속 공무원임면제청권 및 임용권(「국가공무원법」 제32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제2편 지방자치법

39쪽

1) 보통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란 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그 조직·구성 및 권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³⁾가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대등한 법인이며, 그들 사이에 상하복종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변경->

1) 보통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란 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그 조직·구성 및 권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⁴⁾가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대등한 법인이며, 그들 사이에 상하복종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40쪽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변경->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3)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47-48쪽

(7)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의견제출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의견제출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주민의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동조 제4항).

변경->

(7)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의견제출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의견제출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2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주민의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20조 제4항).

57쪽

4)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아래 다음 내용 추가

5)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약칭)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항).

(1) 자치회의 업무

자치회는 ①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3항). 또한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의2 제2항).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8항).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7조의2 제6항).

(2) 자치회의 위원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4항).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고(동법 제17조의2 제5항),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7조의2 제7항).

(3) 국가의 지원의무와 주민자치협의체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9항).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0항).

62쪽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헌법」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제117조 제1항). 따라서 주민복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헌법적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제1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법률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단서). 또한 국가사무⁵⁾에 대해서도 법률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단서). 즉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변경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헌법」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제117조 제1항). 따라서 주민복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헌법적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제1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법률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단서). 또한 국가사무⁶⁾에 대해서도 법률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단서). 즉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5)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6)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①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70쪽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동법 제106조)은 해당 자치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선다(동법 제114조).

변경 ->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동법 제106조)은 해당 자치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선다(동법 제114조).

98쪽

1. 자치구의 재원조정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6조).

변경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6조).

99쪽

<4.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다음으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를 추가하고 <5.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6.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97조 제3항).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99-100쪽

6.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1) 「지방자치법」상 특례

「지방자치법」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동법 제198조 제1항).

②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의 대도시특례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동법 제198조 제2항).

③ 특례 시·군·구: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의 대도시특례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동법 제198조 제2항).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의 특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제58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59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제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경 ->

6.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1) 「지방자치법」상 특례

「지방자치법」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동법 제198조 제1항).

②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의 대도시특례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동법 제198조 제2항).

③ 특례 시·군·구: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의 대도시특례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동법 제198조 제2항).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의 특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제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편 공무원법

111쪽

(2) 특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변경 ->

(2) 특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115쪽

2) 정치적 중립성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동법 제7조 제2항)하여 정권교체에 따르는 행정공백의 불안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적 행위 및 노동운동은 제한 내지 금지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변경 ->

2) 정치적 중립성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동법 제7조 제2항)하여 정권교체에 따르는 행정공백의 불안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적 행위 및 노동운동은 제한 내지 금지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⁷⁾

120쪽

(2) 적극적 요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임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경력직공무원의 임명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변경 ->

(2) 적극적 요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임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경력직공무원의 임명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121쪽

7)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임명의 형식·효력 발생시기

공무원의 임명은 임용장 교부의 형식에 의함이 보통이며, 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 소급임명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 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이 끝난 날이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공무원임용령」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변경 ->

4) 임명의 형식·효력 발생시기

공무원의 임명은 임용장 교부의 형식에 의함이 보통이며, 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 소급임명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일이나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하는 경우,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③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 중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로 하는 예외가 있다(「공무원임용령」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127쪽

1. 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사유로는 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② 사망, ③ 임기만료, ④ 정년, ⑤ 국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있는 경우에 국적 상실 등이 있다.

변경 ->

1. 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사유로는 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33조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② 사망, ③ 임기만료, ④ 정년, ⑤ 국적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국적 상실 등이 있다.

8)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헌재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는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161쪽

4) 소청절차

(1) 소청제기

징계처분·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바, 해당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위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1) 소청제기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바, 해당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위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4편 공적 시설법

본문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법」으로 일괄 교체, 법률 조문의 변화는 없음

(이하 구체 내용)

174쪽

3) 보존공물의 성립

보존공물의 성립에는 보존공물로 볼 만한 형체적 요소 외에,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로 그 물건을 보존공물로 지정(「문화재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7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보존공물은 물건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그 물건 위에 권원을 가진다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존공물로 지정되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지정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28조).

->

보존공물의 성립에는 보존공물로 볼 만한 형체적 요소 외에,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로 그 물건을 보존공물로 지정(「문화유산법」 제23조 내지 제27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보존공물은 물건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그 물건 위에 권원을 가진다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존공물로 지정되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지정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28조).

208쪽

공기업규칙으로 이용료를 결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관할청의 인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있다(「물가안정법」 제4조). 예를 들어 전기요금의 결정 방식을 보면 한국전력 이사회 결정 -> 전기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결정의 절차에 의한다. 이용료는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이용자는 해당 승인을 다룰 원고적격이 있다.

변경 ->

공기업규칙으로 이용료를 결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관할청의 인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가안정법」 제4조). 예를 들어 전기요금의 결정 방식을 보면 한국전력 이사회 결정 -> 전기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부(주무부처)와 재정경제부 협의 -> 산업통상부장관 최종 결정의 절차에 의한다. 이용료는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이용자는 해당 승인을 다룰 원고적격이 있다.

211쪽

(1) 대상사업의 차이

영업허가의 대상인 사업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사업인 데 대하여, 특허기업의 특허는 전기·가스·통신·운수사업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변경->

(1) 대상사업의 차이

영업허가의 대상인 사업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사업인 데 대하여, 특허기업의 특허는 도시가스업·여객자동차운수업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5편 공용부담법

234쪽

I.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과 근거

1.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인적 공용부담이란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말한다. 작위의무의 예로는 수난구호업무종사의무(「수상구조법」 제29조), 부작위의무의 예로는 우편물의 압류금지, 개봉금지, **우편금지제품 발송금지의무**(「우편법」 제7조, 제48조, 제52조), 급부의무의 예로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의무(「도로법」 제91조)를 들 수 있다.

변경 ->

인적 공용부담이란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말한다. 작위의무의 예로는 수난구호업무종사의무(「수상구조법」 제29조), 부작위의무의 예로는 우편물의 압류금지, 개봉금지, **우편금지물품 발송금지의무**(「우편법」 제7조, 제48조, 제52조), 급부의무의 예로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의무(「도로법」 제91조)를 들 수 있다.

239쪽

(6) 부담금에 대한 통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변경 ->

(6) 부담금에 대한 통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241쪽

부작위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예를 들면 공기업의 법률상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인에게 특정 기업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사업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해 부작위부담을 과하는 경우이다(**「우편법」 제2조, 제48조**). 부작위부담은 경찰금지나 재정금지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변경 ->

부작위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예를 들면 공기업의 법률상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인에게 특정 기업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사업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해 부작위부담을 과하는 경우이다(**「우편법」 제48조**). 부작위부담은 경찰금지나 재정금지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308쪽

(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 분양대상자별 부담금의 추산액, ③ 분양신청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2조 제1항). ③

의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2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3항).

변경 ->

(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 분양신청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2조 제1항). ③의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2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3항).

310쪽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 및 고시> 마지막 부분에 문단 신설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2).

제6편 행정작용법

321쪽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조직·인사·경비부담 등 관리의 권한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즉, 위의 권한 등이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이 된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경찰법」 제12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어(「경찰법」 제1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위는 이중적이다.⁹⁾

9)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자치경찰행정청이나,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도기적 모습을 갖는다(홍정선, 438쪽). 반면 「제주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완전한 모습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고(제88조 제1항),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89조 제1항).

변경->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조직·인사·경비부담 등 관리의 권한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즉, 위의 권한 등이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이 된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경찰법」 제12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어(「경찰법」 제1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위는 이중적이다.¹⁰⁾

322쪽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직접적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뜻한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한다. 범죄수사와 피의자체포 등은 원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나, 행정경찰기관에 위탁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196조). 이를 특별사법경찰권이라 한다.

변경->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직접적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뜻한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작용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한다. 범죄수사와 피의자체포 등은 원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나, 행정경찰기관에 위탁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197조). 이를 특별사법경찰권이라 한다.

324쪽

(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은 최상급의 경찰행정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에 소속된 중앙행정관청이다(「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경찰법」 제12조).

변경 ->

(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은 최상급의 경찰행정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에 소속된 중앙행정관청이다(「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경찰법」 제12조).

325쪽

(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10)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자치경찰행정청이나,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도기적 모습을 갖는다(홍정선, 438쪽). 반면 「제주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완전한 모습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고(제88조 제1항),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89조 제1항).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소속된 중앙행정관청이다(「정부조직법」 제44조 제2항).

변경 ->

(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제47조 제2항).

359쪽

(나)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의 내용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로는 경고, 억류 또는 피난조치, 기타 위험방지조치가 있다.

① 경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경고는 즉시강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억류 또는 피난조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억류란 위험한 장소로의 출입을 막는 것을 말하며, 피난이란 위험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기타 위험방지조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불확정개념이나 그 판단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경 ->

(나)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의 내용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로는 ① 경고, ② 이동 제한 또는 대피, ③ 원인제공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 ④ 기타 위험방지조치가 있다.

① 경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경고는 즉시강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이동 제한 또는 대피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③ 원인제공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④ 기타 위험방지조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불확정개념이나 그 판단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72쪽

(1) 수급권자와 적용배제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또한 난민에 대한 특례로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된다(「의료급여법」 제3조의2).

변경 ->

(1) 수급권자와 적용배제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또한 난민에 대한 특례로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된다(「의료급여법」 제3조의2).

375쪽

(바) 권리구제

①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제1항).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변경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제1항).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81쪽 각주31

31)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정신건강복지법」, 「성폭력방지법」, 「입양특례법」, 「위안부피해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등편의법」, 「가정폭력방지법」, 「농어촌복지법」, 「식품기부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법」, 「노숙인복지법」, 「보호관찰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청소년복지법」 등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

변경 ->

31)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정신건강복지법」, 「성폭력방지법」,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위안부피해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등편의법」, 「가정폭력방지법」, 「농어촌복지법」, 「식품기부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법」, 「노숙인복지법」, 「보호관찰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청소년복지법」 등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

390쪽

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7조).

->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7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의2).

406쪽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동조 제3호).

-> 변경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07쪽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며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변경 ->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며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410쪽

(다) 용도구역

① 개념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7호).

변경 ->

(다) 용도구역

① 개념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7호).

439쪽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변경 ->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439-440쪽

(3) 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 따라 대상사업이 각각 다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 모두 18가지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동법 제22조 제1항).

다만,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변경 ->

(3) 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 따라 대상사업이 각각 다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① 도시의 개발사업,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③ 에너지 개발사업, ④ 항만의 건설사업, ⑤ 도로의 건설사업, ⑥ 수자원의 개발사업, ⑦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⑧ 공항의 건설사업, 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⑩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⑪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⑫ 산지의 개발사업, ⑬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⑭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⑮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⑯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⑰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 모두 18가지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동법 제22조 제1항).

다만, ①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②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④ 「재난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441쪽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28조 제3항).

변경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3항).

444-447쪽

3. 환경규제행정에 대한 구제

1)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채택되고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지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동법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환경분쟁의 조정, ②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③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④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⑤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등을 처리한다(동법 제5조).

(3)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의 네 가지가 있다.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조 제4항).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16조의2).

(가) 알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9조 제2항).

(나) 조정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조정위원회)에서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의2).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또한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로 성립된 조정(동법 제33조 제1항)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동법 제33조의2 제4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5조의2).

(다) 재정

재정은 ① 원인재정(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과 ② 책임재정(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의 두 종류가 있다(동법 제35조의3).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①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동법 제36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심문(동법 제37조)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책임재정(동법 제35조의3 제2호에 따른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1조).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동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2조 제3항).

(라) 중재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동법 제45조의2 제1항).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 제5항).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재정(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5조의3).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45조의4).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

변경 ->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1) 환경분쟁 조정제도

(1)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의의

환경분쟁¹¹⁾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채택되고 있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1조).

(2)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지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조 제1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① 건강피해조사, ② 환경분쟁의 조정,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④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⑤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⑥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⑦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조).

(3)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의 네 가지가 있다.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 신청서를

11)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조 제3호).

접수한 경우에 위원회는 신청서 부분(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관할 위원회는 조정(調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調整)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조 제5항).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31조).

(가) 알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알선위원**)이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알선위원은 알선으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제1항).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45조 제2항).

(나) 조정

중앙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조정은 3명의 위원(**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조정위원회)에서 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동법 제50조 제1항). 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또한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로 성립된 조정(동법 제50조 제1항)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동법 제51조 제4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4조).

(다) 재정

재정은 ① 원인재정(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과 ② 책임재정(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의 두 종류가 있다(동법 제56조).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①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

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동법 제57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심문(동법 제58조)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권 등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제1항).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책임재정(동법 제56조 제2호에 따른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62조).

지방법원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제1항).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동법 제56조 제1호에 따른 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라) 중재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동법 제68조 제1항).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 제5항).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재정(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69조).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70조).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71조).

470쪽

(2) 조세채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는 추상적 조세채무이며,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22조 제1항).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신고납세방식, 자동확정방식,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국

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자동확정방식은 특별한 확정절차 없이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동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가 이에 해당한다(동법 제22조 제4항).

변경 ->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는 추상적 조세채무이며,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22조 제1항).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신고납세방식, 자동확정방식,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자동확정방식은 특별한 확정절차 없이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가 이에 해당한다(동법 제22조 제4항).

493-494쪽

1) 부동산회계의 의의

부동산회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산림기본법」 등이 있다. 그 밖에 귀속 부동산의 관리·처분의 일반법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이 있다.

변경 ->

부동산회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문화유산법」, 「하천법」, 「산림기본법」 등이 있다. 그 밖에 귀속 부동산의 관리·처분의 일반법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이 있다.

2. 개별행정법 워크북 수정

87쪽: 11번 문제 ③번 문항 수정

11.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조치의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 ②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에는 경고, 이동 제한 또는 대피, 원인제공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 기타 위험방지조치가 있을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보호조치의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114-115쪽

3.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채택되고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

2)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의 네 가지가 있다.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제1항).

(1) 알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 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7조 제1항).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알선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9조 제2항).

(2) 조정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 제1항).

(3) 재정

재정은 ① 원인재정(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과 ② 책임재정(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의 두 종류가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

재정위원회는 심문(「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4) 중재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중재위원회)에서 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2 제1항).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45조의2 제5항).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재정(「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5조의3).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45조의4).

변경 ->

3.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채택되고 있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1조).

2)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의 네 가지가 있다.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

(1) 알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 한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3조 제1항).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알선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45조 제2항).

(2) 조정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6조 제1항).

(3) 재정

재정은 ① 원인재정(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과 ② 책임재정(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의 두 종류가 있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6조).

재정위원회는 심문(「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8조)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제1항).

(4) 중재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중재위원회)에서 한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68조 제1항).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조 제5항).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재정(「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69조).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70조).

124쪽

26. 다음 중 「환경분쟁 조정법」상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③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등에 대해서는 알선을 준용한다.
- ④ 재정은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의 두 종류가 있다.

정답 : ③

해설 :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재정(「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

26. 다음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상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③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등에 대해서는 알선을 준용한다.
- ④ 재정은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의 두 종류가 있다.

정답 : ③

해설 :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재정(「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69조).

124쪽

28번 문제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해설 : 직권조정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